

NSL1.79  
인권정보자료실  
NSL1.7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 일시 : 1999년 10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향린교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140-133 서울시 중구 명동 명동성당 tel:755.4380 fax:755.4381

NSL1.79  
인권정보자료실

## 비상 시국회의 순서

- **개회 선언**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공동 대표 인사말**
- **명동성당 단식 투쟁보고**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경과 보고**
- **지역·부문 보고**
- **안건 논의**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사업계획안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연대망 형성안
  3. 시국 선언문 검토 및 채택
  4. 기타
- **시국 선언문 낭독**
- **폐회**

## 회의 자료 차례

■ 보고 자료 1.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활동 경과보고 .....	4
<별첨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기간 사업평가 .....	8
<별첨 2> 민주노총 99년 제6차 중앙위원회 국보철회 사업결의(10. 13) .....	10
■ 안건 자료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사업계획(안) .....	11
<별첨 1> 국가보안법 폐지 만인선언 .....	12
<별첨 2>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지침 .....	13
■ 안건 자료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연대망 형성(안) .....	14
■ 안건 자료 3.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선언문(안) .....	15
■ 참고 자료 1. '99 서울 NGO세계대회 참가 기획안 .....	17
■ 참고 자료 2. '99 서울 NGO세계대회 서명 선전물 .....	20
■ 참고 자료 3.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제출 국보법 요약문서 .....	22

## <보고 자료 1>

###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활동 경과보고

#### ○ 결성취지

북녘동포들을 무조건 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들과 진실한 마음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하면 이적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토록 하는 법, 겉으로는 교류.협력하는 체지만 속마음으로는 봉괴와 전복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법, 또 그렇게 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했어도 금전적 지원까지 받도록 해주는 망신스러운 법,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의 미래를 위해 다른 나라 다른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조사하고, 연구하며, 발표하고, 토의할 수조차 없도록 하는 법, 자유와 평등,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수도 해야될수 없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 오록해온 법, 이미 세계사적 흐름 속에 이념과 체제를 불문하고 결코 제약될 수 없는 기본권적 요구로 되고 있는 개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음으로서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나 엠네스티로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법,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세대들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자유와 평등의 통일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이상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족을 적대시하며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요청됩니다.

#### ○ 참가단체현황(10.12 현재)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범국민행동연대(소속23개단체)/미일전쟁책동경체침탈분쇄와국가보안법완전철폐 공안탄압분쇄를위한범국민투쟁본부(소속16개단체)/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실현.IMF반대범국민운동본부 국가보안법철폐공동투쟁위원회(소속60개단체)/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천주교연대(소속33개단체)/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불교연대(소속8개단체)/기독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련 공공연맹 공익노련 금속산업연맹 대학노련 민주관공 민주금융 민주버스 민주섬유 민주택시 민철노련 병원노련 사무노련 시설노련 언론노련 전강노 전교조 전일노협 화물노련 화학연맹 대노협 현노협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경북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강원본부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전국빈민연합회/전국노점상연합회/전국철거민연합회/민중생존권을위한철거민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회(서총련 / 경기남부총련 / 경기동부총련 / 인부총련 / 충청총련 / 남총련 / 대경총련 / 강총련 / 부경총련/제총련 /전국학생회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여자수도회장상 연합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회(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회,빛두레신앙인 학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천주교도시민민회,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회,장기수가족후원회,천주교청년공동체, 인천교구가톨릭청년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환경사제모임/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사)우리신학연구소/광주대교구노동사목/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부산교구노동사목/(사)푸른평화/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우리신학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우리는선우/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불교바로세우기법제가연대/불교인권위원회/불교장기수후원회/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민중교회선교연합회/영등포산업선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기독교청년회/청년한인회/민중의료인연합노동과건강연구소/노동자의힘/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한국여성노동자연합/민주인문시민연합/민중예술인총연합/신시민운동연합/서울노동청년포럼/전국장애인협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4월혁명회/민중정기수호협의회/참교육시민모임/4월혁명회/노동자의힘(준)/노동정책연구소/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민중사회운동연합/열린사회시민연합/인권운동사랑방/민주노동당(준)/청년진보당/민중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자주평화통일비상대책위원회/한총련학부모협의회/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한겨레전국독자주모임/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대학영자기자연합/자주인문운동연합/민중의기본권보장과양심수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서울연합(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나라사랑청년회, 북부지부,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통일세상을열어가라는관악청년회, 천주교청년공동체, 구로청년회, 신바람,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교조서울시지부, 서울시노점상연합, 서울철거민연합, 서울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자통서울회의, 성동광진시민회, 구로일사랑노동청년회)/인천연합/경기남부연합/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부산연합/울산연합/대구경북연합/서부경남연합/전주완주지부/한국민주청년단체연합(준)(분당청년회/성남청년회/용인청년회/이천청년회/하남청년회/터사랑청년회/구로청년회)양심수군문제해결을위한모임/정치수배해제조계사농성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학생연대회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하남통일여는사람들/남북민간교류협의회/ 푸른평화/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전태일기념사업회)

## ○ 조직 체계

- \* 고문
- \* 대표자회의
- \* 집행책임자회의
- \* 상임집행위원회 - 상황실 - 투쟁기획, 선전홍보, 조직, 총무

## ○ 투쟁 경과 및 일정

- 9월 20일 국가보안법철폐 제 단 간담회 개최 (오전 10 명동성당)  
참가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P반대범국민운동본부국가보안법철폐 공동투쟁위원회,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행동연대  
- 국가보안법철폐 현황에 대한 공유, 명칭등 향후 계획안 마련키로 함  
- 참가단체를 확대하기로하다.
- 9월 22일 국가보안법철폐 제단체 집행책임자 회의 (명칭등 향후 사업안 검토)  
참가 : 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범국민행동연대(소속23개단체)/미일전쟁책동경제침탈분쇄와국가보안법완전철폐공안탄압분쇄를위한범국민투쟁본부(소속16개단체)/민중생존권쟁취. 사회개혁. IMP반대범국민운동본부국가보안법철폐공동투쟁위원회(소속60개단체)/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천주교연대(소속33개단체)/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불교연대(소속8개단체)/기독교단체등
- 9월 27일 국가보안법철폐 제단체 집행책임자회의

- 1) 10월 2일 국민대회 주요사항 결정
- 2) 나머지 사안 대표자회의에 위임하고 협의키로 하다.

### - 9월 28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각계원로 및 대표자 연석회의(오전 9시 명동성당)

- \* 각계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현황보고
- \*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다.
-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각계원로 및 대표자공동 기자회견(11시)

### - 9월 30일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1차 상임집행위원회(명동, 12:00)

- 1) 인선안 마련
- 2) 1차 행동의날 준비점검

### - 10월 2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1차 범국민 행동의 날 < 2시, 대학로 - 명동성당(춧불대행진) >

- 국가보안법 폐지 명동성당 농성돌입
- \* 단식투쟁 : (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
- \* 삭발투쟁 : ( 도영호 경기남부연합 의장, 신용욱(용인청년회 회장), 남언호(성남청년회 회장,허근영(터사랑청년회 회원),임인출(터사랑청년회 회원), 김진성(하남청년회 회장),김영도, 이증원, 오인환(서울연합)

### - 10월 6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2차 상임집행위원회( 명동성당)

- 1)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회의 사업안 논의 확정
- 2) 1차 행동의날 평가
- 3) 인선 확정

### - 10월 9일 1)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시민, 학생 결의대회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범국민연대회의 - 주관 : 교육대학위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 시간 : 2시
- \* 학생시민 1500명 참석(대회사 문정현 신부님)
- 2) 각지역 부문은 국가보안법 철폐촉구 결의대회(각 지역, 부문상황 고려하여 전개한다.)  
\* 각 부문 결의문 및 항의서한 채택 국회 민원접수  
\* 각 부문별로 청와대, 국회법사위에 민원접수 \* 면담요구(면담일정은 10월 12일, 오전 11시)
- 3)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속보 발행(팩스신문)

### - 10월 1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3차 상임집행위원회( 명동성당)

- 1) 10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준비안 확정
- 2) 10월 16일 2차 범국민행동의 날 기획안 확정
- 3) 10월 30일 문화제 기획안 확정

### - 10월 12일 NGO 대회장 캠페인 또는 집회(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 1) 한민청,학생 25명결합 국가보안법 철폐서명(550명)
- 2) 0.75평 모의 감옥 제작, 퍼포먼스, 국가보안법철폐서명 전개  
SOFA 개정집회 (미대사관 질의서 접수시도)
- \* 집회참석한 미대사관 앞에서 폭력적으로 전원연행( 밤 11시 석방) 이규재(민노총 부위원장등 15인

### - 10월 13일 3당 당수 방문 및 면담 공문접수 ( 18일 오전 11시 )

- 1) NGO 대회장 캠페인 장소 : 올림픽 공원내 (펜싱경기장) 서명 ( 250명 )  
- 중간집계 : 250명(외국인) 530명(내국인)
- 2) < 국회법사위, 청와대, 국민회의,한나라당,자민련 항의민원 접수 및 항의 전화의 날 >

- \* 각 지역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 3) 10.14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한겨레 광고 게재

• 10월 14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회의( 시간 : 3시 장소 : 향린교회 )

- \* 지역상황보고, 국가보안법 철폐 전국 연대망 구축
- \*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계획, 시국비상결의문 채택
- 1) NGO 참가 국가보안법철폐서명 캠페인 전개 - 장소 : 올림픽 공원내 펜싱경기장
- 풍물, 촌극, 퍼포먼스등 문화행사

• 10월 15일 1999 서울 NGO 세계대회 (폐막식)

-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
- 장소 : 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 외국인 서명자와 시국회의 참가자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한겨레 광고 게재

• 10월 16일 국가보안법 철폐 제2차 범국민행동의날( 대규모야발 투쟁전개 )

- 1) 지역은 동시다발 집회 개최(지구당사앞), 수도권은 서울집중
- 2) 신문투고, 광고 투쟁집중 (각지역 부문)

• 10월 18일 1)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 국회의사당앞 )

- 2) 서명 청원 국회전달
- 3) 국회의장면담, 3당 당수 면담
- 장소 : 국회의사당앞 시간 : 미정

• 10월 20일 언론사 항의 방문( 조선일보사, 한겨레 신문사)

• 10월 2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결의대회( 국회의사당앞 )  
시간 : 미정

• 10월 30(토) 국가보안법철폐 3차 범국민행동의날

- 장소 : 대학로 시간 : 2시 (이후 조계사 행진)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 문화제(주최 :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 장소 : ( 조계사 ) - 시간 : 미정

• 10월 3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광고

• 10월 30일 국가보안법 철폐 한국청년결의대회 (장소 : 대학로 시간 : 12시 - 1:30시까지 )

• 10월 30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만인 선언(신문광고게재)

• 10월 30일 국제연대 사업 1차 총화

## <별첨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기간 사업평가

### ■ 사업별 평가

#### 1. 서명운동 - 담당 : 조직위원회

- 1) 경과 - 각 지역별, 단체별로 서명운동 전개, 순례단 서명운동, 농성단 서명운동
- 2) 서명현황 - 광주 11,954명, 청주 7,066명, 안동 333명, 부산 2,868명(6,000여명추가), 서울 2,391명, 마산 3,197명, 인천 8,098명, 수원 651명, 제주 512명, 대전 430명, 원주 2,227명, 춘천 364명, 대구6,370명, 수녀장상연합회 2,447명, 순례단 7,317명, 전가대협 909명, 농성단 1005명
- 현재 서명집계 : 58,139명(사무실로 집계된 현황임)
- 3) 일정 - 10월 중순경 공동입법청원 예정, 10월 15일까지 사무국으로 2차 집계하기로 함.

#### 2. 2000인 선언 - 담당 : 조직위원회

- 1) 사업경과보고
- 2) 광고일시
- 한겨레 신문 - 8월 26일자 형식 : 하단 5단 통광고
- 평화신문 - 8월 29일자 형식 : 전면광고, 가톨릭신문 - 8월 29일자 형식 : 하단 5단 통광고
- 3) 광고비용(총계 : 588만원)
- 한겨레신문 : 250만원 평화신문 : 250만원 가톨릭신문 : 88만원
- 4) 선언인 집계
- 사제단 : 60명, 인권위 : 60명, 천정연(우신연, 농민회 포함) : 280명, 인천교구 : 609명(광고게재62명)
- 원주교구 : 71명, 부산교구 : 255명, 청주교구 : 119명, 안동교구 : 119명, 광주대교구 : 642명, 전주교구 : 40명, 수녀장상연합회 : 241명
- 총계 : 성직자 (342), 수도자(493), 평신도(1170).
- 선언자 총계 : 성직자 - 375명 수도자 - 493명 평신도 - 1191명
- 선언자 총계와의오차 : 지도위원, 개별참가자

#### 3. 전국순회기도회 - 담당 : 사업위원회

- 1) 일정 : 1999년 8월 16일 - 9월 12일(28일간)
- 총구간 : 4,740KM(일일 169km)
- 연참석인원 -중앙순례단 156명(일일 6명) 지역결합 562명(일일20명)
- 순례성당(기도회, 미사 개최) - 33개 성당 순례성지 - 10곳 거리선전전 - 20군데
- 참가성직자 - 77명, 연대단체 - 36개 단체 장기수의집 방문 - 7곳
- 2) 순례코스
- 서울-부평-인천-수원-안성-대소-광혜원-청주-대전-논산-강경-용안-함열-여산-천호-신태인-부안-정읍-익산-전주-군산-수류-광주-목포-부산-마산-창원-밀양-화원-대구-상주-안동-제천-원주-춘천-서울
- 전주부터는 자전거순례
- 서명현황 - 7,173명

#### 4. 심포지엄

- 1) 경과 : 일시 : 9월 15일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 발제자-이장희, 최병모, 정영
- 2) 현황보고 : 1시-국회앞 미사 후 심포지엄-250여명 참석, 자료집 배포 문제, 발제자 선정의 문제

5. 단식농성 - 담당 : 농성집행단

- 1) 경과 : 9월 7일 사제단 단식 돌입, 9월 10일 단체별 지지단식 시작  
매일 8시 미사, 단식소식지, 하루소식 발행, 시국기도회 개최, 연속광고 게재
- 2) 현황 : 10월 3일 단식 풀 예정, 30일 농성장 철수,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와의 관계설정

6. 질의서 - 담당 : 기획위원회

- 1) 질의서 문안 - 농성집행단에서 작성
- 2) 현황보고 -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 현재 13명 응답(존속4, 폐지5, 기타4)
- 3) 이후 미답변자에 대한 대응은? 질의서 문안을 보강하여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 지구당위원장, 국회의원들에게 재발송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키로 함.
- 4)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방안 제안됨 - 질의서 문안은 계획된 대로 독자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사업속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연대키로 함.

7. 홍보물 제작

- 이후 지역상황, 사업
- 인천교구- 정기국회기간동안 매주 수요일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봉헌
- 부산교구 - 매주 월요일 성당별로 순회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봉헌
- 서울교구 - 매주 월요일 8시 가톨릭대학생연합회회관 경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봉헌
- 마산교구 - 매주 월요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봉헌

<별첨 2> 민주노총 99년 제6차 중앙위원회 국보철 사업결의(10. 13)

가. 조직체계

9.28,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및 대표자연석회의에서 120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약칭 '국보법폐지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와의 관계 : '국보법폐지 연대회의'는 '국민연대'가 국보법 7조개정만을 목표로 하는 단체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립관계가 아닌 연대로 설정했다. 따라서 양자는 독자적인 실천을 수행하면서 개정의 요구를 폐지의 요구로 전인하도록 한다.

나. 단계별 투쟁계획

[1단계(투쟁동력 형성) : 10월 초순까지] : 추진되었음.

- ① 국가보안법철폐투쟁 연대기구 결성 : 국보철 연대회의
- ② 교육선전
- ③ 상층 선도투쟁 : 단식농성, 공동기자회견 등
  - 9/7일부터 신부 30명 단식농성 돌입
  - 9/14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결의대회 개최(12:00 국회 앞)
  - 9/21 각계 인사 공동기자회견(단병호 위원장, 이규제 통일위원장 참가)
  - 집회 : 제1차 10.2 범국민행동의 날(집회)
  - 국보철 연대회의 구성(9.28)

[2단계(대국민 확산) : 노동자대회까지]

- ① 국보법 폐지 전국 제사회단체대표자 시국대회(10월 14일 15시 향린교회)
- ② 교육 및 서명운동
  - \* 민주노총 조합원서명은 중앙위 결의 후 10월 14일부터 시작
  - \* 10월중순부터 조합원 교육 및 홍보
- ③ 신문 광고, 대자보 부착, 프랜카드걸기 등 대중선전 : 10월중순부터
- ④ 10.16(토) 14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 수도권 종묘공원 → 명동 (지역별 집회)
- ⑤ 노동자 만인 선언 조직(1인당 1천원씩 연명, 지역별 26일까지 명단, 금액 제출)
- ⑥ 10.30(토) 14시 제3차 범국민행동의 날 : 대학로 → 조계사
  - \* 조직별 깃발 걸고 참여 및 만인 선언 조직화

[제3단계(국민행동기) : 노동자대회 전후]

- 국회청원
- 11/13~14 전국노동자대회 등 부문별 집회 및 대규모 민중대회 (노동시간단축 및 국보법 철폐 식발식 검토)
  - \* 국보철 서명지 전달식 등 결합
- 여의도 국회앞 농성투쟁 : 각계 대표를 중심으로 농성투쟁 및 집회
- 상임위 대응 : 여야정당 중앙 및 지구당사 농성
  - 국보법 철폐반대 국회의원 소환운동(몇 명을 케이스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사업계획(안)

### 1.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제반 상황 공유와 투쟁 기초 공유.

###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사업계획(안)

####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전국동시집회 개최.

- 10월 16일, 30일, 11월 13일(수도권의 경우 서울집중집회)
- 집회에서 대중적 삭발투쟁(단식) 진행.
- 서울의 경우 평일은 국회앞 집회 진행, 지역도 실정에 맞게 다양한 투쟁기획 개발.

#### 2) 범국민 서명운동 진행 및 서명용지 중앙 취합, 국회 청원.

- 10월 14일 1차 취합, 10월 16일 2차 취합. 전달은 중앙으로 집중.
- 10월 18일 1차 국회 청원.

#### 3) 중앙당사 및 지구당사 항의 집회, 농성.

- 서울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항의집회, 농성, 기타 행동 등을 진행.

#### 4)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만인선언 조직(신문광고)

#### 5) 지역, 부문별로 신문광고 조직, 신문투고 조직.

#### 6) 전국적 공동 홍보·선전 실시, 표준 선전물(대자보, 선전물) 작성.

#### 7) 국회 상임위에 개정안 상정시 중앙에서는 국회앞 농성투쟁 전개, 지역의 경우 거점별로 농성투쟁 등 전개.

#### 8) 11월 13~14일 민중대회(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모든 투쟁을 집중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만인선언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앞둔 1999년,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억압과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반쪽을 타도와 붕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이적행위로 매도 당하고, 수많은 민주애국 인사를 감옥의 창살아래 묶어두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아니 폐지되어 사라지지 않고서는 그 거짓과 억압의 본질을 벗을 수 없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군사정권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라는 권력의 허울은 달라지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민중의 양심을 억압하고 민족의 염원을 가로막는 점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이미 죽은 것임을 고발하고자 한다. 수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를 결선하고 활동할 자유조차 부정하며, 수 많은 국민들을 권력에 순종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폭력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고발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시대 민주주의의 시대에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반통일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악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는 정치적 흥정과 타협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화의 첫걸음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비껴가려는 정권의 얄은 수작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 부분적 개정이 아닌 전면폐지만이 국가보안법 문제의 올바른 대안이자 해법이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면 폐지하라!!!
2. 모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3. 범민련, 한총련등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중단체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라!!!
4. 공안탄압, 민중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이 폐지 된다면 분단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만다”는 극우보수 세력의 주장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며 선언을 맺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폭력과 반통일 반민주적 법률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라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체제라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체제이다.”

이름:  
주소:  
나의 주장

서명:

<별첨 2>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지침

이제 바야흐로 애국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 냉전 해체로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남북교류로 민족대단결의 기운이 상승하여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된지 오래다.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유엔인권위, 국제사면위원회등 많은 국제단체들도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구시대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마저도 이북과의 관계개선과 제재해제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김대중 정부와 부패한 정치권만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고 개정과 대체입법을 운운하고 있다. 이 개탄스러운 현실앞에서 30여명의 신부님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민족민주 운동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삭발, 단식, 농성, 집회등 다양하고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4천만 민중들은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족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돌입하자.

1. 각지역에서는 지역의 각계각층역량을 모아내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을 형성하고, 10월 2일을 기점으로 2 주마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한다.
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회청원운동, 국민서명운동 및 각계각층 1만인 선언을 적극 조직하여 광범위한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3. 중앙에서는 청와대,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중앙당에, 지역에서는 각 정당의 지구당사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단이 항의방문, 항의집회를 적극 조직한다.
4. 성당, 교회, 사찰등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예배, 법회 등을 진행하고 촛불행진등 다양한 행동전을 전개한다.
5.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회등 모든 민주단체들은 사무실앞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매주 토요일에는 역, 터미널 등지에서 서명운동, 선전전, 집회 등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6.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가슴에는 리본을, 가방에는 버튼을, 자동차와 버스 지하철에는 스티카를 부착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7. 10월 16일, 10월 30일, 11월 13일등 2주마다 진행되는 국민행동의 날에는 오후 2시를 기해 택시, 승용차, 버스등 모든 차량에서 10분동안 경적을 울려 국가보안법 철폐의 국민적 염원을 표출하고 국민행동의 날에 동참한다.
8.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 대중매체에 투고, 전화참여, 편지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뜻을 알려낸다.
9. 청와대, 여야 정당, 지구당사 등에 전화를 걸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할 시에는 엄중 항의한다.
10. 모든 네티즌들은 통신공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항의 메일을 보낸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주인도 4천만 국민이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세세상의 주인도 4천만 국민이다. 4천만이 결기하여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끝장내자.

<안건 자료 2>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연대망 형성(안)

1.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각계·부문·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집중하기 위해 전국 연대망을 형성한다.
2. 전국 연대망은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각계·부문 연대조직, ·각 지역 연대조직으로 구성한다.
3. 전국 연대망 운영은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상임집행위원회, 상황실)과 각계·부문·지역 연대조직 집행책임자와의 연락망을 설치하여 제반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4. 국회에 일부만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거나 전국적 집중투쟁 필요시, 제2차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안건 자료 3>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선언문(안)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탄생하여 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옥죄고 억누르기 시작하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민족적 실천에 대한 탄압의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억압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개척하려는 민중적 행동에 대한 권력의 억압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으며, 1948년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피눈물과 고통의 역사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앞둔 1999년, 희망과 장미빛 미래를 선동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민중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새로운 복지와 발전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권력의 속삭임과 현란한 수사에 현혹된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돌이킬 수 없는 민주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민중들의 삶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기쁨이 아니라 분노였다.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범민련, 한총련 등 민족민주 세력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사건등 연이은 공안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목소리는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갈가리 찢겨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여론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선언 50돌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등 정치인 100여명이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권유로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했지만 국보법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의 양심들이 탄압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제도적 장벽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 학문 언론 표현의 자유등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악법이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협약등 국제법에 위배됨으로써 온 민족의 철폐요구와 함께 유엔 인권 이사회로부터도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은 국가보안법 철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전면 폐지돼야 한다. 일각에서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만을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하고있으나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악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서는 위헌 상황을 종식시킬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시행돼야하며, 이와 관련된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도 일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오직 한줌도 안되는 권력집단과 보수세력들만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인권 정부라는 거짓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얄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극우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손을 대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몇 조를 고치고 몇몇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전부인양 비취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거부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폭력과 반민주적 법률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라면 국민의 민주적 동의와 지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회라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사회이다. 다시한번 4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에 온 겨레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염원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함으로써 분단 공안통치를 끝내고 조국통일정국을 활짝 열어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제 들불이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을 권력자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들불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모진 탄압속에서도 수십여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이제 커다란 들불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자세로 20여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전개한 천주교 사제들의 행동은 이미 작은 불씨가 되었다.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과 계층의 틀을 깨고 우리 사회의 모든 민주적인 노동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들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1999년 10월 14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참고 자료 1>

'99 서울 NGO세계대회 참가 기획안

1) '99 서울 NGO세계대회 일정

- 기간 : 99년 10월 10일 - 10월 15일(6일간)
- 장소 : 서울 올림픽 공원, 경희대학교
- 대회목적 : ● 유엔이 주재한 역대 국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
  - NGO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연대와 협력을 증진
  - NGO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NGO간의 연대망을 강화
  - 주요정책수립에 있어 NGO와 정부기관 및 유엔기구의 협의를 활성화
- 주최 :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NGO협의회
  - 유엔 공보처 NGO 집행위원회
  - 경희대학교/맑은사회운동 국제본부

- 주요행사 일정표

구분	내용	일정	장소
전시행사	환영리셉션	10/10	올림픽공원 88마당
	개회식	10/11	체조경기장
	학술회의	10/11-15	올림픽공원 일대
	폐회식	10/15	체조경기장
	환송리셉션	10/15	올림픽공원 수변무대
전시행사	NGO 홍보마당	10/11-15	펜싱경기장
	NGO Street	10/10-15	펜싱경기장 일대
	Thème 전시	10/10-15	펜싱경기장 일대
전시행사	NGO 민족페스티벌	10/11-15	상설공연장
	NGO Performance	10/10-15	상설공연장
	평화의 행진	10/15	올림픽경기장 일대

- 학술회의 주제

구분	학술회의 주제										
기조연설	21세기 NGO의 역할										
전체회의	의제1: 20세기의 회고-NGO시각 의제2: 21세기의 전망-NGO시각 의제3: 인류문명의 평가 의제4: 미래의 진보										
분과토의	<table border="0"> <tr> <td>평화와 안보</td> <td>환경과 주거와 인간</td> </tr> <tr> <td>보편적 교육</td> <td>윤리와 가치</td> </tr> <tr> <td>인간 존중과 인권</td> <td>사회/경제 개발</td> </tr> <tr> <td>양성평등</td> <td>청소년과 아동</td> </tr> <tr> <td>보건과 건강</td> <td>노인복지</td> </tr> </table>	평화와 안보	환경과 주거와 인간	보편적 교육	윤리와 가치	인간 존중과 인권	사회/경제 개발	양성평등	청소년과 아동	보건과 건강	노인복지
평화와 안보	환경과 주거와 인간										
보편적 교육	윤리와 가치										
인간 존중과 인권	사회/경제 개발										
양성평등	청소년과 아동										
보건과 건강	노인복지										
기타행사(전시 및 워크숍)	NGO의 활성화 성공사례발표회 지역별 모임										

2) '99 서울 NGO세계대회 참여 방안

- 전시행사 : NGO홍보마당(10월 11 - 15일, 펜싱경기장) 90여개 국내의 단체가 참여신청을 하였고(9월30일 마감) 단체별로 자체의 부스를 통해 상설적인 홍보를 진행함. (정대협, 엠네스티 한국지부등). 오전 9:30 - 오후 5:30.
  - ☞ 대응방안 : 1안) 국보철 범국민연대의 명의의 부스를 설치하여 선전과 서명을 조직하고 이를 국회나 청와대에 청원한다. (경희대 총학생회에서 학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 6일중 결정됨)
  - 2안)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부스를 통해 국보철 서명과 선전을 진행한다.
- 분과토의 : 한얼광장 간이 회의소에서 180개의 분과토의가 진행됨.(10월 12 - 13일)
  - ☞ 대응방안 : 분과토의중 '인간존중과 인권' 주제에 적극결합 분과결의로 국보철을 이끌어 낸다. 팀장인 차미경(참여연대)씨 통한 구체적 확인 및 추진.
- 행사장 캠페인 :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선전을 하고 문화행사와 포퍼먼스등을 통한 여론을 형성한다.(10월 10 - 15일 올림픽공원 행사장 일대)
  - ☞ 대응방안 : - 세계각국어로된 플랑카드를 제작하여 부착한다.(외국어대에서 제작)
  - 날짜별로 책임단위를 선정하고 단위별로 문화행사와 선전을 준비한다.

### 3)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

#### ○ 행사취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NGO 대회는 실제 참가하고 있는 단체의 구성을 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NGO 대회가 아님이 명확하다. 또한 유엔인권위와 엠네스티등의단체의 권고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반인권적 악법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도 정식의제로 채택되어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수많은 사회단체의 불참은 이번 NGO대회가 단지 정부주도의 행사로서의 현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한 행사임을 명확히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부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이번NGO 대회에 참여한 세계각국의 대표들에게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분명히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15일 폐회식 때에 맞춰 반민족 반통일악법,반민주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NGO 대회에 참가한 유엔의 대표나 세계각국의 단체대표들에게 위헌적 국가보안법에 대해 널리 알려내고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서 당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국제적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부의 의도 맞서 국민들의 국가보안법철폐의 결의를 분명히 한다.

#### ○ 일시,장소

- 장소 : 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 ) - 주최 :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연대회의

####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참가단체

#### ○ 행사개요

- 폐회식이 진행되는 행사장 밖에서 서명을 전개한다.
- 다양한 선전물을 준비하고 외국대표들의 관심을 유발할수 있도록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분명히 한다.
- 향후 NGO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이루어 낸다.

#### ○ 행사내용

- \* 약식 거리 집회형식을 취한다.
- \* 행사장 주변에서 서명을 받는다.

- 사회자
- 단체 참가대표 및 인사소개
- 단체별 국가보안법에 대한입장발표
- 퍼포먼스(문화행사) - 국가보안법철폐 주제
-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 - 권오현 선생님
- 국가보안법피해사례 - 민가협

### <참고 자료 2> '99 서울 NGO세계대회 서명 선전물

## Please Join In Signature Campaign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NSL) in Korea

Dear NGO participants.

As you know, the NSL has been existing for more than 50 years in Korea. Now, hundreds of progressiv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resisting against the law. Please join in the signature campaign.

Pan-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NSL

We are worried that the NSL has been still existing, which has been condemned by the progressive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both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s the most anti democratic and anti-human rights law in Korea.

So we demand that the NSL should be abolished immediately, because it is still getting abused as a core measure to oppress the Korean people's progressive movement as well as basic human rights. Moreover, we think that it

shoule be vital value to defend peace and democracy under the Korean specific condition of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We demand to abolish the NSL immediately which is oppressing the free actions and voices of Korean people for peace and democracy.

NO.	NAME	NATIONALITY	ORGANIZATION	SIGNATURE
1				
2				
3				
4				
5				
6				
7				
8				

Pan-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NSL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비판적 양심과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단체를 탄압하고 억압해왔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50여년, 반세기를 넘기고 있다. 냉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이고 주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배권력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통해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전부터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와 사회운동의 지도자로부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비난받아왔던 국가보안법이 새로운 세기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민주·진보운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되는 모든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체제가 다르고 상호적대적인 국가로 나뉘어진 분단사회에서는 평화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지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참고 자료 3>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제출 국보법 요약문서

50년이면 많이도 참았다!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51년 전에 제정되었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 정부는 좌익운동을 불법화했다. 그러나 지하에는 상당히 강한 친 좌익세력이 존재했으며, 민중들은 잇따른 대규모 폭동에 참가했다. 국가보안법은 좌익활동과 폭동을 규제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로서 제정되었지만 '좌익세력' 혹은 '폭도'와 일반국민을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은 결국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서 태어난 것이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남한은 좌익을 철저히 '청소'했지만 국가보안법은 계속 강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해왔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온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에 나타났던 사라져간 모든 독재정권들은 이 국가보안법을 '내부의 적'에 대한 더없이 편리한 무기로써 애용해왔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점점 억압함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위축시킴으로써 견고한 반공사회를 유지하는 데 이용해왔다.

## 국가보안법, 어떤 법률인가?

"국가보안법의 지속적인 적용에 대해 위원회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특수상황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정상적인 법률, 즉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중략) ...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그 입법을 자유권규약에 더욱 합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제45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검토 후 채택한 의견서(CCPR/C/79/Add.6)에서 -

국가보안법의 핵심개념은 '반국가단체'(2조)이며, 국가보안법은 이 '반국가단체'와 관계를 갖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3조),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왕래하는 행위(6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모든 행동과 그런 표현물을 가지고 있는 행위(7조), '반국가단체'와 만나거나 통신하는 행위(8조) 등등이 그것이다. 이 '반국가단체'는 구체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의미하며,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여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국가가 된 후에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계속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표현양식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남한 국민의 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과거에 비해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권 출범 1년간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413명이며 이것은 이 기간 남한의 모든 정치적 구속자 중 거의 60%에 해당된다. 즉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우리 나라 '양심수문제'는 60%가 해결되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 7조, 전천후 독소조항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는 거의 7조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주요한 내용은,

- ①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1항),

- ② 그런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3항),
  - ③ 그런 혐의가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5항)이다.
- 7조는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결사행위나 표현행위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며, 전통적으로 '정권의 적'을 처벌하는 데 동원되어왔다. 7조야말로 정권을 수호해주는 '만능의 신'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1년의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 413명 중 396명(95.89%)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출판사 사장, 컴퓨터 통신으로 의견을 개진한 '네티즌',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와 상영자에서 한국 최대의 공개적인 대학생 학생회연합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매우 다양하다. 요컨대 국가보안법 7조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웬만큼 비판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전천후 독소조항이다.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의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적용하여 각각 별도로 유죄판결을 내린 박태훈사건과 김근태사건에 대해 제64차 회기(1998, 10, 6-1998, 11, 6)중에 CCPR(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정해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 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998년 11월 22일, 한겨레신문사와 한국의 대표적인 3개 인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는 공동으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기관은 한겨레신문사 여론조사팀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1%)

	폐지	개정 완화	현행 유지	강화	기타/잘 모름
일반국민(성인남녀700명)	7.7%	70.5%	11.6%	7.3%	2.9%
변호사 (153명)	27.5%	65.4%	4.6%	0.7%	2.0%
법학교수(100명)	29.0%	70.0%	0	0	1.0%

지금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여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에 가입해 있으며 천주교, 불교, 개신교에는 각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연대기구가 있다. 또한 7조 폐지를 최소한 조건으로 모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에는 121개 단체가 결합해 있다. 이런 사실은 사실상 한국에서 활동적인 거의 모든 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 "국가보안법 제자리!"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의 어느 연설에 이어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 내지 대폭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최근에는 가장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국가보안법 7조 마저도 폐지는커녕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도 현재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대로 남긴 채 사소한 부분만을 수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검사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온전히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T.755-4380 /F.755-4381)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한다

## ■ 번역 문서

# The National Security Law

### 1. Historical Backgrou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legislated fifty-one years ago in 1948. After getting out of the colonial rule by the Japanese imperialism, separate governments were set up in South and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Althoug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south of the peninsula made the leftist movement illegal, there existed underground substantially strong leftist forces and there had largely been the involvement of the left wing in uprisings of great scale occurred nationwide. While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promulgated with a view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se leftist forces, it was bound to assume the character of violating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and peaceful demonstrations of all nationals as well as the leftist forces from the beginning.

While the left wing has been dwindled almost to non-existence in the South through the Korean War in which the left and the right fought each other in a cruel manner,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continuously reinforced itself and exists even today.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South Korea is the reason for the continua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ll the dictatorial regimes which came and vanished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vailed themselv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order to suppress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ir opponent forces and to sustain the strong anti-communist society by diminishing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ordinary people.

### 2. National Security Law

The core concep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nti-State organization' (Article 2)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enactment that punish all acts related with this 'anti-State organization'. These are: acts of forming or joining an 'anti-State organization' (Article 3), acts of coming and going into the areas controlled by the 'anti-State organization' (Article 6), all acts of praising and sympathizing an 'anti-State organization' and acts of possession of such expressions (Article 7), acts of meeting and corresponding with the 'anti-State organization' (Article 8) and the like. Such an 'anti-State organization' means concrete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still designates North Korea as the 'anti-State organization' after North became a State internationally recognised when both South and North Korea obtained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in 1991.

The expressed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so abstract and vague that academics argue that it contracts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The number of people in South Korea punish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never been decreased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n comparison with the past. The number of detainee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the first yea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s 413 and this amounts to almost 60 percent of all political prisoners of South Korea in this period.

After examining the government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45 session, the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pointed out in its conclusions (CCPR/C/79/Add.6) as follows:

The Committee's main concern relates to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lthough the particular situation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finds itself implications on public order in the country, its influence ought not to be overestimated. The Committee believes that ordinary laws and specifically applicable criminal laws should be sufficient to deal with offences against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some issues address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are defined in somewhat vague terms,

allowing for broad interpretation that may result in sanctioning acts that may not be truly dangerous for state security and responses unauthorized by Covenant ...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tensify its efforts to bring its legislation more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venant. To that end, a serious attempt ought to be made to phase 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the Committee perceives as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and, in the meanwhile, not to derogate from certain basic rights.

### 3. Article 7

The cases of violation of civil right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re centered on Article 7 almost exclusively. The main content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o punish (i) acts of praising, sympathizing or propagandizing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para. 1), (ii) acts of organizing and joining of an association for such purposes (para. 3), (iii) acts of making, distributing or possessing all such expressions (para. 5). Article 7 is the provision that enables the punishment of those acts of assembly and expression unrelated to North Korea, and has been invoked traditionally to punish the 'enemies of the governmental regime'.

The statistics of the first year after the start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hows that 396 of the 413 people (95.8 %) had been detained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victims vary widely from the owner of the publication company, 'netizens' who expressed opinions through the computer communications to the producers and presenters of the documentary films,

Mr. Abid Hussain,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ppoin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strongly recommended to the Korean government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for its viol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his report to the 51st session of the Commission (E/CN.4/1996/39/Add.1, 21 November 1995).

In the Park Tae Hun and the Kim Geun Tae cases where the Korean courts convicted them individually in application of paragraphs 1, 3 and 5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decided that these viola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19 of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venant and called upon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CCPR/C/64/D/628/1995, 3 November 1998; CCPR/64/D/574/1994, 20 November 1998). Bu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taken any remedial action so far to these two victims.

### 4. The Public Opin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November 22, 1998, the Hangyoreh newspaper and three representative human rights groups (Lawyers for the Democratic Society, MINGAHYUP Human Rights Group and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conducted together a survey of public opin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survey was done by the public opinion survey team of the Hangyoreh newspaper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Repeal	Attenuation	Maintenance	Reinforcement	Do not know well
Ordinary People	7.7%	70.5%	11.6%	7.3%	2.9%
Lawyers	27.5%	65.4%	4.6%	0.7%	2.0%
Law Professors	29.0%	70.0%	0%	0%	1.0%

There are existing active movements fo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ow in Korea. A number of organizations joined the 'People's Solidarity fo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re are solidarity networks each in the Catholic, the Buddhists, and the Reformist Churches for its repeal. About 250 civil groups demand either revision or repeal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certain forms.

### Pan-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NSL